

반송불능 우편물 습득금 국고귀속 공고

[서울중랑우체국 공고 제2026-16호]

서울중랑우체국에서는 보관기간이 경과한 반송불능 우편물 습득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[국고에의 귀속], 우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.

- 공 고 사 항 -

1. 국고귀속일 : 2026.10.14.(수)
2. 국고귀속대상

반송불능우편물	발송인	이관일	금 액(원)
6117102192904	고○숙	2025.9.25.(목)	100,000
6100403119945			210,000
6108101215377			100,000
6100104371904			200,000
합 계			610,000

3. 국고귀속 범위: 보관기간 경과한 반송불능 우편물 습득금
4. 환급기간: 공고기간 내 (2026.9.14.(월) ~ 2026.10.13.(화))
5. 환급장소: 서울중랑우체국 4층 지원과 방문
6. 환급청구 시 구비서류
 - 가. 실명확인증표
 - 나. 본인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
 - 다. 본인 아닌 경우는 아래 서류 추가
 - 1) 위임장(인감 날인, 오시는 분 신분증) 1부
 - 2) 인감증명서 1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랑우체국 지원과(02-2239-0514)로 연락 바랍니다.

2026년 9월 14일

서 울 중 랑 우 체 국 장